환경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 1. 31.(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3. 1. 30.(월)
담당 부서 <총괄>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7340)
		담당자	서기관 안상혁 (044-201-7341)

생산 · 소비 · 재활용 전 과정에 순환경제 전환 박차

- 2023년 환경부 자원순환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

1 (순환경제 기반 강화) 순환자원고시, 규제특례제도 도입, 신산업 육성

2 (플라스틱 감량) 행동변화형 감량캠페인, 컵보증금제 성공모델 구축

3 (온전한 재활용) 분리배출 제도 개편, 물질·열분해 재활용 인센티브 등

4 (불법행위 원천방지) 첨단 기술 활용 지능형 폐기물 관리, 공공책임 수거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31일 올해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지난해 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이 공포('22.12.31)됨에 따라 올해에는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순환경제** :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

○ 올해 추진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순환경제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온전한 재활용 전환,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1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위한 신설 제도*의 세부규정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 (개정규정 시행일) ❶순환자원 고시,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등('24.1)
❷수리용이성 제고, 유통포장재 감량 노력 등 준수사항 시행 등(25.1')

○ 안전성이 검증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를 추진함으로써 유용 폐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한다.

* 예) ❶폐지: 종이 및 종이제품 원료, ❷고철: 금속성 제품 원료 등 우선 검토예정

○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적용·도입을 위하여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규제특례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규정의 정비 전이라도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허가 등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 ❶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❷인허가 규제 신속확인 요청 및 일괄처리, ❸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및 절차 등

○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에 관한 사항, 예비부품의 확보 및 배송기한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준수사항은 제조업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 플라스틱, 미래폐자원(전기차 폐배터리, 이차전지 등) 등 순환경제 주요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회(포럼)를 구성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다회용기 산업 등 순환경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 다회용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음식점 등의 다회용기 구매, 대여·세척 비용 지원('23년, 69억 원)으로 초기 시장을 활성화 한다.

○ 탈(Post)-플라스틱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24년, 부산 생곡)하여 감량 및 순환이용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 플라스틱 전주기 기술 연구개발(R&D) 기획을 추진한다.

○ 폐배터리의 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실시간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순환이용 기술개발·실증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 (~'25년, 포항)하는 한편,

- 재활용이 어려운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서는 전처리 기술개발을 지원('22~'24년, 33억 원)한다.

2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은 줄이되 감량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 음식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고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배달앱에는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22.11~)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환경부-배달앱간 자발적협약을 통해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 후 일회용품 미제공 선택 비율이 최대 4.8배(A배달앱, 13%('20.6) → 62%('21.6)) 증가

○ 일회용기 두께, 재질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일회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성을 개선한다.

* 두께)최대 두께기준, 재질)PP, PS, PET 등 → 단일재질, 색상)반투명 또는 투명

□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빠르게 안착되도록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22.12.2) 이후 일회용 컵 반환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회용컵 컵 반환금액은 859천원/일('22.12) → 1,229천원('23.1)로 43% 증가

○ 소비자에게는 올해 1월 1일부터 일회용컵 반납 시 보증금(300원) 외에 200원(탄소중립포인트)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 참여 매장에 대한 라벨 배송비 지원, 매장 외 반납처(세종 60개소, 제주 100개소 이상) 확대 등의 참여 행사*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 컵반납시 음료쿠폰 제공 등 프로모션, 우수매장 보증금 포함 라벨지원(30만원 상당) 등

○ 아울러, 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0~3.2) 중이다.

3 소각형 재활용 → 온전한 재활용(물질・화학원료)

□ 분리배출 요령을 개선하고, 분리배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 선별시설을 자동화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선별・재활용 공정 발전에 맞춰 분리배출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배출요령을 간소화**하되, 새롭게 분리배출 필요성이 제기된 품목(책자 등)은 고품질 재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게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❶광학선별기 보급 등 선별자동화('23년, 10개), ❷노후시설 신·증설(~'25년, 65개), ❸잔재물 2차 선별시설 및 종량제봉투 파봉선별시설 설치('23년, 5개) 등

** 예) ❶색상분리가 가능한 자동선별기 설치 지역 → 색상별 유리병 분리배출 미적용
❷스티커 제거가 가능한 감용기 설치 지역 → 스티로폼 스티커 제거 완화 등
❸기타 배출시 불편사항 개선(책자 스프링 제거 등)

○ 분리배출 통합 누리집(홈페이지)을 구축하여 지역별 분리배출 방법·장소・수수료 등 정보를 제공하고, 분리배출 지침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열회수와 연료 활용 중심의 소각형 재활용을 고부가가치 물질·화학(열분해) 재활용으로 전환한다.

※ (생활폐비닐 재활용 비중, '20년) 소각형재활용 80% vs 물질·화학재활용 20%

○ 폐플라스틱의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을 지원('22~'25년, 492억 원)하고, 물질·화학적 재활용 업체에 대한 재활용지원금 단가*를 높인다.

* (현재 지원금 단가) 물질·화학 재활용 173원/kg, 소각형재활용 160원/kg

○ 공공열분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23년, 6개)하고 열분해유를 활용한 플라스틱 제품도 폐기물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재활용실적 산정방법 및 감면기준을 마련한다.

○ 플라스틱(PET 1만톤/년 이상) 생산 업체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23년 3% → '30년 30%)하고,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와 공공기관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촉진 지침도 마련한다.

□ 시도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도 올해부터 차등교부한다.

○ 지난해까지는 시도별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일괄 교부했으나, 올해부터 인구당 소각·매립량을 줄이는 지자체에는 징수금의 최대 90%를 교부한다.

※ (교부율) 인구당 소각·매립 증가시 → 50%, 인구당 소각·매립 감소시 → 90%

④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 인계·인수량 외에도 차량 이동경로(GPS), 처리업체에서의 계근값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지능형 폐기물관리시스템(이하 지능형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 지난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로 지능형시스템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적용시점) 건설폐기물('22.10) → 지정폐기물('23.10) → 사업장일반폐기물('24.10)

<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 개요 >

단계	기존 정보		추가 수집정보
운반	ㅇ 인계·인수량(운반자 입력)		ㅇ 차량 이동 경로(GPS) ⇒ 체류정보, 이상경로 확인
입고	ㅇ 인계·인수량(처리자 입력)	⇒	ㅇ 계근값, 계근대 CCTV 정보 ⇒ 위변조 차단, 인계량 누락 확인
보관	ㅇ 폐기물 대장(처리자 작성)		ㅇ 보관시설 CCTV 정보 ⇒ 보관기준 준수여부 확인

□ 재활용시장 침체 때마다 반복되는 폐기물 수거거부(폐지, 폐비닐 등)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개입을 확대한다.

○ 폐지 등 수거거부 발생 우려가 큰 품목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또는 대행계약 체결)하는 공공책임수거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반출입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 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22~'25년)한다.

- 지난해부터 공공선별장 50곳을 대상으로 반출입량 정보 확인용 단말기를 설치 중이며, 올해에는 선별장 및 소각·매립시설 1,900곳까지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정부 내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지난해 마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그간의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2. 2023년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7340)
		담당	서기관	안상혁 (044-201-7341)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60)
		담당	사무관	김지수 (044-201-7363)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책임자	과 장	김상훈 (044-201-7421)
		담당	사무관	서윤영 (044-201-7422)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책임자	과 장	마재정 (044-201-7380)
		담당	사무관	박용범 (044-201-7386)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책임자	과 장	이주창 (044-201-7400)
		담당	사무관	김종민 (044-201-7407)
	환경부 자원순환국 1회용품 대책 추진단	책임자	과 장	김남희 (044-201-7417)
		담당	사무관	황남경 (044-201-74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구 분	내 용
① 다회용기 산업육성	·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환경표지 인증제 시행('22.12~) · 다회용기 구매·대여·세척비 지원 확대 시행('23.1~, 69억원)
②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 순환자원 인정기준(11개 → 4개) 완화('23.1~) ※ (삭제내용) 고형폐기물일 것, 사용자 직접공급, 추가 가공 불가 등 · 순환자원 지정 고시 제도 도입('24년 시행)
③ 폐기물 처분부담금 개선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요율 및 감면기준 개선('23.12~) ※ ❶사업장 비배출시설계 부담금 요율 하향 조정(25원/kg→15원/kg), ❷중소기업 감면기준 확대 및 열회수 감면기준 개선
④ 분리배출 제도 개편	· 지역별 분리배출 정보제공 통합 홈페이지 구축('23년) · 분리배출 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23년) ※ 환경부, 지자체, 재활용 업계, 선별업체, 시민사회 등
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활성화	· 열분해유의 석유·화학 원료 활용 재활용 유형 신설('22.11~) ※ (종전) 열분해유는 보일러 등의 연료로만 활용 가능
⑥ 공공책임수거 및 공공비축 확대	· 공공책임수거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및 운영지침 마련('23.12~) ※ 대행계약 해지상, 계약금액 조정 기준 및 수익금 지원 방법 등 · 공공비축시설용량 확대('21년 1.3만톤 → '23년 3.5만톤)* * '21년 4기(안성·대구·청주정읍, 1.3만톤) → '22~'23년 4기(음성·양주 2.2만톤) 추가
⑦ 순환골재 상시 품질관리	· 순환골재 품질검사 의무화 및 보관기준 등 신설('23.12)
⑧ 의료폐기물 태그별 입고	· 전용 소각장 입고 시 태그별 입고방식 시행('23.3~) ※ 입고방식 전환(차량단위 → 태그단위)으로 부적정 폐기물 관리 개선
⑨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전송제도	· 지정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23.10~) ※ 시행시점 : 건설폐기물('22.10) → 지정폐기물('23.10) → 사업장일반('24.10)

붙임 2 **2023년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2023년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다회용기 서비스 공급망 구축



다회용기 보급, 대여·세척 등 다회용 전환 지원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발굴



순환자원 인정건수·품목

폐기물관리 시스템 고도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확대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기반 마련



공공열분해시설 추진 개소수(누적)

공공 중심의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대상 확대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추진 개소수(누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활용 확산



전기차 폐배터리 매각 실적



순환골재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